

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, 이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관계법령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5조
-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110조

3. 주요골자

- 가.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 (안 제2조)
- 나. 기금은 국·시비 보조금, 구의 출연금,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,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,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,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함 (안 제3조)
- 다.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드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,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,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단, 사업비용은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,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함 (안 제5조)

- 라. 기금 지원대상은 수급자, 자활공동체, 자활사업실시기관,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, 또는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등으로 함 (안 제6조)
- 마. 기금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는 경우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고,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% 함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건은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활공동체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는 개인, 기관·단체등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 기금화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관리와 운용을 하므로써 사회안정망 구축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한다고 생각되며
- 또한 자활갱생과 자립의지를 배가시켜 건전한 생활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적극 봉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 추구의 기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합리적 실현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일조가 되고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 한다고 판단됨
- 특히 서구를 비롯한 사상구·북구등 타구에서도 기회 조례가 설치 되어 있고 관련법령에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
2004년 12월

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